기획재정부	보도자료		
보도일시	2018. 9. 5.(수) 15:00	배포일시	2018. 9. 5.(수) 14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이용욱 (044-215-5150)	담당자	장준영 사무관 (044-215-5153) jy4434@korea.kr
	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서가람 (044-203-4430)		최재홍 사무관 (044-203-4432) choi0984@korea.kr

광주 평동 산업단지 국유지 상에 공장 증·개축 허용

-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기업 규제애로 해소로 일자리 200여명 창출 -

□ 그 동안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제에 묶여있던 **광주 평동산단 입주기업**의 **공장 증·개축이 가능**해졌다.

○ 기재부는 8.31 산업부로 **평동산단 내(內) 국유지**에 대한 **관리·처분권한을 지정**했으며,

○ 이에 따라 산업부는 5일 **산업단지 관리권자**(광주시)에게 **관련권한을 위임**함으로써 **입주기업체 15곳**에 대한 공장 **증·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** 했다.

□ 이들 기업은 지난 2013년 5월 평동 **외국인투자지역 해지** 후 5~20년 동안 **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**하는 조건으로 **국유재산인 공장부지**(산업용지)**를 매입**하였으나,

○ 「**국유재산법**」에 따라 **매각대금이 완납 된 이후**에 **소유권 이전이 가능**하고, 그 전에는 국유지 상에 **증·개축 행위를 포함**한 **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**되어,

○ 입주기업이 최근 **투자확대**를 위해 **설비 증설 등이 필요**함에도 불구하고 **공장 증·개축을 할 수 없었다.**

< 국유재산법 >

제18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,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

제51조(소유권의 이전 등)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.

□ 이에 기재부와 산업부는 동 사안에 대해 **법제처의 유권해석**을 통해 「**산업집적법**」**을 적용**해 **공장 증·개축을 허용**할 수 있도록 했다.

○ 이 법에 따르면 **산단 내 국유지를 임대**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지 상에 **공장 설치가 허용***되는데, **매각대금을 분할납부**하는 경우도 **동 규정을 적용**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*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(산업집적법 제34조제3항)

□ 정부의 이번 조치로 평동산단 입주기업은 **상당한 기간이 소요**되는 **법률개정**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**생산설비를 증설**할 수 있게 되었으며,

○ 이에 따라 **약 250억 원의 투자**와 **200여명의 신규 일자리**가 **창출*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앞서 **문재인 대통령**은 지난 1월 열린 **규제혁신 토론회**에서 **"법령 개정 없이 해석만으로 해결** 가능한 **규제가 32%**"라고 언급하여, **일선 부처**의 **적극적 법령해석을 당부**한 바 있으며,

○ 기재부는 앞으로도 **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제약**하는 규제는 **법령해석을 우선 검토**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대응하여 **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*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